

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

(제43조제4항 관련)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서울과학수사연구소	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9	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(용인시·광주시·이천시·여주시 ·안성시·평택시·가평군·양평군 제외)
부산과학수사연구소	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50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 (거창군·산청군·함양군 제외)
대구과학수사연구소	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호국로 33-14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(영주시· 문경시·봉화군·예천군 제외), 경상남도 거창군·산청군·함양군
광주과학수사연구소	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-15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전북특별자치도(무주군 제외)
대전과학수사연구소	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24	대전광역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 (충주시·제천시·단양군·음성군 ·괴산군 제외),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제주출장소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21	제주특별자치도

비고

1.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관할한다.
2.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의 감정량과 중요도, 감정인력 및 시설·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사무를 일시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또는 다른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가 처리하게 할 수 있다.